



가축검정기준

[시행 2018. 7. 1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2018. 7.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우·젓소 <생략>
2. 돼지 <생략>
3. 종계 <생략>
4. 종오리

가. “순오리(PL)”라 함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써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라 함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종오리(PS)”라 함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라 함은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

나. “순종오리 검정”이라 함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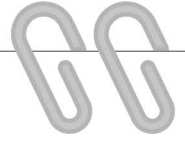
다. “일반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 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종오리(PS)에서 생산된 실용오리(CD = Commercial Duck)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5. 공통

가.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 “가축개량협의회”라 함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자문기구로 검정방법,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제3조(적용) 검정기관은 본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축종별 검정실시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한우 검정기준 <생략>
- 제3장 젖소 검정기준 <생략>
- 제4장 돼지 검정기준 <생략>
- 제5장 닭 검정기준 <생략>
- 제6장 오리 검정기준

제59조(검정대상 및 방법 등) ① 종오리의 일반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오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종오리(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 증서(종오리혈통서)를, 수입된 종오리(P,L, G,P,S)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
2. 종오리검사 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오리검사의 신청은 종오리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육용종오리의 경우 18개월(78주)까지로 한다.

② 일반검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
2.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
3.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의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제60조(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① 종오리의 능력검정은 “종오리검정”과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② 능력검정은 종오리 또는 육용종 실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한다.

제61조(종오리검정 대상) 종오리검정은 육용 종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2조(종오리검정 방법) ① 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령

1. 육추율 : 첫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0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표시한다.
 3. 성오리 생존율 : 20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72주령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4. 8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8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5. 20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20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6. 72주령 체중(첫 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7. 첫 산란일령(50%)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8. 72주령 산란수(72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times 2 \div (개시수수 + 72주령 종료수수))
 9.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10.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③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3조(경제능력검정) 경제능력검정은 육용종 실용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4조(경제능력검정 방법) ① 육용종 실용오리(C.D)를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정대상은 사육수수규모에 따라 1%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병아리의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 ②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토종오리 8주령)으로 한다.
- ③ 검정오리는 검정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양관리하는 다른 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양관리하여야 한다.
- ④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 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율 : 농장의 입식수수에 대한 6주령(토종오리 8주령) 생존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 첫모이를 주기 직전과 3, 6주말(출하시, 토종오리 8주)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조사는 검정종료일에 측정한다.
 3.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기타

제65조(검정결과 처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종계·종오리 일반검정 결과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검정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등록기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등록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① 한우와 젃소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② 돼지, 닭, 오리 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2018-63호, 2018. 7.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이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